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83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6. 17.

발의자 : 허영·양이원영·송재호
오영환·이용우·김영배
윤후덕·이용빈·홍기원
신영대·위성곤·박홍근
황운하·임호선·최종윤
윤준병·조오섭·송기현
유정주·김정호 의원
(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은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,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.

현행법은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조성은 규정하고 있으나,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.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의 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나
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 및 「수목원·정원의 조
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
성사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(안 제4조 및 별표).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 중 “광장”을 “정원 · 광장”으로 한다.

법률 제180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1호(11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11) 「수목원 ·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공익사업)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.	제4조(공익사업) -----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·공장·연구소·시험소·보건시설·문화시설·공원·수목원· <u>광장</u> ·운동장·시장·묘지·화장장·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	3. ----- -----정원·광장-----
4. ~ 8. (생 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